

한국어 강사 및 다문화 언어강사 인력풀 구성 계획

I 운영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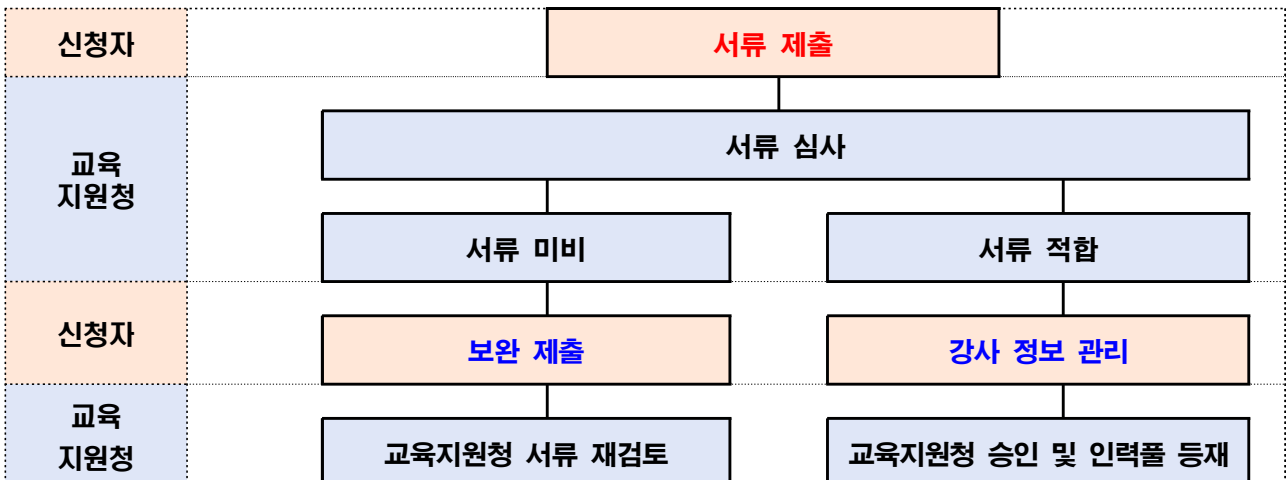
-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강사 채용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 해소
- 다문화 및 외국 국적 아동 한국어 능력 향상 지원 및 교육 활동 공백 최소화

II 운영 개요

- (모집기간) 2025. 12. 31.(수) ~ 2026. 1. 22.(목) 18:00
- (모집대상) 한국어 강사 및 다문화 언어강사
- (등재기간) 인력풀 등재일로부터 1년간
- (모집기준)
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 -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며, **연 3회 이상 실시되는 강사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가 가능한 자**

구분	한국어 강사	다문화 언어강사
자격	·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, 한국어 교육 1년 이상 유경험자(모두 충족)	· 다문화 언어강사 양성 과정 수료자(경인교육대학교) · 외국어 능력(영어 제외) 관련 자격보유자 · 모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이주민 중 TOPIK 3급 이상 소지자 · 이중언어 지도 경력이 1년 이상 유경험자

- (강사수당) 시간당 32,000원 ※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언어강사 강사료 기준에 따름
- (모집절차)



III 등재 분야 및 자격

- (등재분야) 화성오산 관내 학교 한국어 강사 및 다문화 언어 강사
- (등재자격)
 -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며, 연 3회 이상 실시되는 강사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가 가능한 자

구분	한국어 강사	다문화 언어강사
자격	·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, 한국어 교육 1년 이상 유경험자(모두 충족)	· 다문화 언어강사 양성 과정 수료자(경인교육대학교) · 외국어 능력(영어 제외) 관련 자격보유자 · 모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이주민 중 TOPIK 3급 소지자 · 이중언어 지도 경력이 1년 이상 유경험자

- (등재제한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. 피성년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성인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·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
-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IV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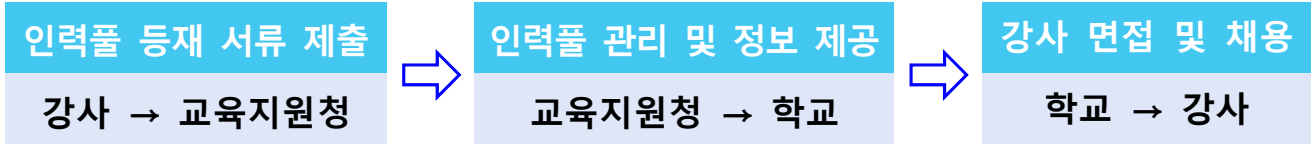
- 제출기한: 2025. 12. 31.(수) ~ 2026. 1. 22.(목)
 - 제출방법: 전자우편(이메일) 또는 우편(등기)
 - 전자우편(이메일): xahal203@korea.kr
 - 우편(등기):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
주경기장 1층 1201호 화성교육지원센터(다문화교육지원센터)
우편번호: 18588, 전화: 031-354-5278
- ※ 우편, 메일 접수는 접수 기한 도착분에 한함
- 제출 서류
 - ① 한국어 강사 및 다문화 언어강사 인력풀 등재 신청서 1부 [서식 1]
 - ②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1부 [서식 2]
 - ③ 자격증 1부
 - ④ 경력증명서 1부
- ※ 메일 제출 시 스캔 후 PDF 파일 1개로 제출 (예시: 한국어 강사_홍길동 / 다문화 언어 강사_홍길동)
- 등재 사실 통지: 연락처 문자 안내
 - 등재 기간: 인력풀 등재일로부터 1년
- ※ 등재 기간 만료 전 정정·삭제 방법: 등재자 본인의 [서식3] 제출을 통한 정정·삭제 요청

V 유의사항

- 해당 인력풀 등재로 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.
 -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요청에 따라, 해당 학교에 한국어 강사 및 다문화 언어강사 인력풀을 제공합니다.
 - 학교의 채용이 결정되면, **임용 시 구비서류*** 및 성범죄경력,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,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사전동의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*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(최근 2년 이내) 또는 일반채용신체검사서(최근 1년 이내) ②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(1년 이내) ③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(기 검사자는 기존 증빙서류 제출)
-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, 기재 착오, 제출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 - 신청서 및 각종 증명서의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, 인력풀 등재 자격이 제한됩니다.

○ 기타 문의 :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교육지원센터 ☎ 031)354-5278

※ 시간강사 인력풀을 통한 채용 흐름도



- 붙임 1. 한국어 강사 및 다문화 언어강사 인력풀 등재 신청서 1부. [서식 1]
2.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1부. [서식 2]
3. 시간강사 인력풀[열람/ 정정 / 삭제] 신청서 1부. [서식 3]

한국어 강사 및 다문화 언어강사 인력풀 등재 신청서

※ 접수번호: (미기재)

인적사항	성명	(한글)		(영어)				
	생년월일	1900.00.00		성 별	남 / 여			
	주 소	(우:)						
	E-MAIL			휴대전화				
	모 국 어	이중언어강사 작성란		교육 가능 언어	이중언어강사 작성란			
	근무 희망 지역 (중복 선택 가능)	오산시	화성시					
	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		오산시	서신면 송산면	마도면 남양읍	비봉면 매송동 새솔동	우정읍 장안면	팔탄면 양감면	봉정면 담양면
	교육 경력	근무기간			근무(교육)기관명			
		2021.03.01. ~ 2024.02.29.			○○다문화가족지원센터			
. . . ~ . . .			○○초등학교					
. . . ~ . . .								

자격	※ 교육활동 및 다문화학생 지도 관련		
	자격명	취득일자	발급기관
	이중언어강사양성과정수료	0000.00.00	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
	한국어 교원(0급)		
	TOPIK 0급		

위 기재 사항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.		
2026년 월 일		
작성자 :		(서명)

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

[서식 3]

한국어 강사 및 다문화 언어강사 인력풀 [열람 / 정정 / 삭제]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처리기간	
정보주체 (신청인)	성 명		연락처	
	생년월일			
	주 소			
신청내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 및 복사	열람(복사)사유		
		열람 대상 (급별 / 지역구 등 기입)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정정	정정하려는 내용과 그 사유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삭제	삭제사유		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제1항 및 제2항,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,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

(서명 또는 인)

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